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(2023년)

☐ 계약 목적

- 수급자 권리보호, 보호자의 욕구 충족,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 방지 등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

☐ 계약 목적

- 계약기간: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
- 이용시간: 평일 8시~20시 / 토요일 8시~18시
- 이용절차

입소상담 → 서류준비 → 임시적응기간 → 판정회의 → 이용승인통보 → 입소

☐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(2023년)

등급	이용시간	본인부담금 (주 5일, 월 20일 기준)	비급여 (점심+간식+저녁 기준)	총액
2등급	10시간	178,980	180,000	358,980
3등급	10시간	165,240	180,000	345,240
4등급	10시간	160,740	180,000	340,740
5등급	10시간	156,150	180,000	336,150
비급여 항목	식비: 1식 4,000원 / 간식비: 1일 1,000원			

* 어르신 등급별, 이용시간별 세부 금액 기준은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·세부사항」, 「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」 참조

☐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- 이용 규정 참조

☐ 계약의 해제

- 이용 규정 참조

☐ 불임

- 서비스 이용 규정

서비스 이용 규정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석관데이케어센터(이하 ‘센터’로 한다.) 이용 어르신의 계약과 서비스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치매어르신 등 장기요양 대상 어르신의 복지증진과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이용대상) 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장기요양등급(1~5등급)을 받거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
2.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(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)

제3조(이용정원) ① 센터 정원은 64명으로 한다. 다만 인지지원등급자는 3명까지 정원 외로 받을 수 있다.
② 이용 정원의 변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신고·변경한다.

제4조(모집방법) 센터는 온·오프라인을 통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관 및 급여 종류를 홍보하여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1.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, 센터 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
2. 전화상담, 인터넷 상담 후 방문 및 내방
3. 신문, 전단, 현수막, 생활정보지 광고 등
4. 기타

제5조(계약의 목적 및 절차) ① 이용계약의 목적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에 있다.

1. 수급자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
2. 서비스제공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
3.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

② 서비스 계약은 [별지 제1호서식] 계약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부본을 제공하여야 한다.

제6조(계약기간)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하며 장기요양등급, 본인부담금의 변경 등의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.

제7조(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) ① 월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, 본인부담금, 비급여로 구성하며 세부 사항은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다.

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이용요금을 홈페이지,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안내한다.

③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,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.

④ 그 외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.

제8조(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)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센터는 수급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.

1. 관계법령, 지침, 고시의 변경으로 수가가 변경된 경우
2.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

3.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
4. 비급여 항목의 변경이 있을 경우

제9조(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) 제10조의 비용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센터는 제7조제2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 고시 개정으로 수가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급여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수급자에게 안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10조(계약의 해지) ① 수급자(보호자)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2. 센터가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3. 센터가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(보호자)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
4. 기타 수급자(보호자)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②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(보호자)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
2.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3. 수급자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4.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5.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6.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서비스 이용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

③ 수급자(보호자)는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센터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센터는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(보호자)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.

⑤ 수급자(보호자)는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수급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. 다만,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센터는 등기,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수급자(보호자)에게 송달처리 한다.

제11조(신원인수인의 권리)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.

1.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2.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,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
3.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, 외출에 관한 관리
4.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5.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6. 입소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7.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,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8.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
9.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, 퇴소(전원)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제12조(신원인수인의 의무)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.

1.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,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2.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, 기타 비급여 항목 등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3.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4.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
5.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, 입퇴소 절차,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
6.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, 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

제13조(서비스 내용) ①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신체활동지원 : 세면도움, 구강관리, 머리감기기, 몸단장, 옷 갈아입히기, 목욕도움, 식사도움, 이동도움, 신체기능의 유지·증진, 화장실 이용하기 등
2. 간호 및 처치 : 관찰 및 측정, 투약 관리, 호흡기간호, 피부간호, 통증간호, 배설간호, 그 밖의 처치, 의사진료보조 등
3. 기능회복훈련 : 신체·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, 신체기능의 훈련, 기본동작 훈련,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, 일상생활 동작훈련, 물리치료, 작업치료 등
4. 기타서비스 : 응급서비스, 치매관리 지원, 의사소통 도움, 언어치료 등

② 제1항의 서비스 내용은 수급자(보호자)의 개별적인 상황 및 센터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
제14조(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) ① 제13조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은 센터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」의 규정에 따른다.

제15조(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) ①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센터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수급자(보호자)는 센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② 센터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센터는 수급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, 센터가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.

③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.

제16조(면책범위)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수급자가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
2. 센터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3. 센터 이용 중 직원들이 수급자의 치매에 따른 문제행동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언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행동으로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
4. 서비스 시간 외에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
5.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
6.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
7. 수급자가 센터에 별도로 보관을 맡기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 분실하게 되었을 때